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63

발의연월일: 2021. 6. 8.

발 의 자:정점식・김용판・서일준

성일종 • 윤한홍 • 정찬민

이 용・추경호・이만희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설의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로써 항만 인근에서 환자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하계가 있음.

또한, 최근 항만 이용객이 늘고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시설의 정의에 대해 항만시설 인근주민도 이용하는 시설 임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추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사항의 개정을 통해 항만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다목, 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5) 중 "사람, 여객"을 "사람, 항만시설 인근지역의주민, 여객"으로, "진료소"를 "진료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

제52조 중 "녹지,"를 "녹지, 공공보건의료기관,"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용수시설(用水施設)"을 "용수시설(用水施設)·공공보건의료기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 또는 변경하는 항만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5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원시설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5)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	사람, 항만시설 인근지역의
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	<u>주민, 여객</u>
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	
숙박시설· <u>진료소</u> ·위락시설·	진료소 및 공공보건
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u> 의료기관</u>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	
공시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u>신</u> 설>

- 9. (생략)
- ② (생략)
-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 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 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u>녹지</u>,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생 략)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 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철 도·<u>용수시설(用水施設)</u>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 원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제6소(항만기몬계획의 내용) ①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녹지, 공공보건의료
기관,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용수시설(用水施設)·공공보건
의료기관
<u>.</u>
· ③·④ (현행과 같음)
⊕ ⊕ (± 0 - 1 'E □ /